

2021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188억 5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4,675	18,851	18,851	-	-	-	-
세외수입	12,182	12,182	12,182	-	-	-	-
경상적	1,088	1,088	1,088	-	-	-	-
임시적	11,077	11,077	11,077	-	-	-	-
변상금	17	17	17	-	-	-	-
지방교부세	0	61	61	-	-	-	-
보조금	2,492	6,607	6,607	-	-	-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1	1	1	-	-	-	-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4조 3,723억 5천 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3조 6,007억 9천만원 대비 21.4% 증액(7,715억 6천 9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596,614	3,600,790	4,372,359	775,745	771,569	21.6%	21.4%	
행정관리	소 계	318,118	322,294	325,405	7,287	3,111	2.3%	1.0%
	행정운영경비	138,392	138,392	138,392	0	0	-	-
	재무활동	10,700	10,700	10,726	26	26	0.2%	0.2%
	사업비	169,026	173,202	176,287	7,261	3,085	4.3%	1.8%
교 부 금	3,278,496	3,278,496	4,046,954	768,458	768,458	23.4%	23.4%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1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311,037	3,311,037	4,082,606	771,569	771,569	23.3%	23.3%
행정장비구매	972	972	1,251	279	279	28.7%	28.7%
쾌적하고 안전한 청 사 관 리	29,318	29,318	30,718	1,400	1,400	4.8%	4.8%
노후 시설물 개선	409	409	1,100	691	691	168.9%	168.9%
공무직출산휴가등 대체인력 지원	433	433	637	204	204	47.1%	47.1%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294	1,294	1,394	100	100	7.7%	7.7%
조정 교 부 금	3,278,496	3,278,496	4,046,954	768,458	768,458	23.4%	23.4%
만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115	115	526	411	411	357.4%	357.4%
국고보조금 반환	0	0	26	26	26	100.0%	100.0%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 검토

- 금번 행정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에 6억 9천 1백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에 14억원과 “조정교부금” 7,684억 5천 8백만원 등 총 8건에 7,715억 6천 9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가. 행정장비 구매

- “행정장비 구매”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 및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1억 2천만원), ‘서소문청사1동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집기구입비(1억 5천만원)등 총 3건에 대해 2억 7천 9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추경 사유	21년 제1회 추경		증감액
			기정	추경	
행정장비 구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계			279,084
		○ 신설 및 재배치 조직 집기구입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219,396	339,216	119,820
		○ 청사 사무환경개선 집기구입 - 서소문청사1동 사무환경개선	698,368	844,632	146,264
		○ 시정 행사용 카메라 구입	-	13,000	13,000

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자산 및 물품취득비)

- 동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2021.7.1)에 따라 사무공간 조성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행정 장비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1,384	971,564	119,820	-사무집기류(책상,서랍,캐비닛 등) : 111,820천원 -전자제품 집기류(냉장고,TV,프린터 등) : 8,000천원

예산과목 증감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집기 구입	=	119,820천원
	-사무집기류(책상, 서랍, 캐비닛 등)	=	111,820천원
	111,820,000원		
	-전자제품 집기류(냉장고, TV, 프린터 등)	=	8,000천원
	8,000,000원		
	증감사유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부서 집기구입		

- 행정국은 2020년 12월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바, 사무국 설치와 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다만, 관련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교부 않은 상태에서 사무국 사무실 집기를 전액시비로 구매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 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행정국은 국비형태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교부 받을 예정이며, 포괄 보조금 성격에 맞게 기타 자치경찰 관련 경비에 지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 국비 교부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절차를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기존 시비로 대체 집행할 경우, 추후 교부받은 국비의 반납이 예상되는 바,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 선(先)확보 및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관련 예산은 17개 타 시·도에서도 추경 편성하였으므로, 경찰청에서 집행관련 자치단체 이양사무 비용지원 안내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추진현황

○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비용 지원 요청('20.12월)

-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행안부 → 자치분권위원회)

○ 지방이양비용평가 심의('21.3월~ 계속)

- '21.5.13. 분과위원회 심의 완료 후 5.28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하였으나, 기재부 반대로 운영비 국비 지원 안건 통과 무산

- '21.6.25. 자치분권위원회 재상정예정, 추후 국비 지원 여부 결정됨

※ 타 시·도 : 사무국 공간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 기 편성

-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기구를 구입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사무국 청사 임대계약을 완료(2021.4.30.)하였을 뿐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도 추진하고 있는 바,
 -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행정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진현황

- '21.04.30. : 자치경찰사무국 청사 임대계약 추진 및 계약 완료
- '21.05.31. : 입주를 위한 임대청사 리모델링공사 중(※현 공정률 83%)
- '21.06.10. : 입주부서 책상 등 집기류 배치 및 입주 예정

② 서소문청사(1동) 집기구입

- 동 사업은 2021년 사무환경개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4개부서(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에 대한 사무공간 개선을 위한 집기구입을 위해 1억 4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행 정 장 비 구 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17,888	971,564	146,264	-환경개선부서 사무집기류 구매: [4,822천원 + (992천원 x 32명)] x 4개부서 = 146,264천원

- 동 사업은 본관과 서소문2청사를 비교하여 열악한 서소문1청사의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 근무만족도 향상 및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02.01. ~ '21.07.30.
- 사업예산 : 1,367,063천원
- 추진실적 : 18개부서 환경개선 완료('21년 6월 현재)
- 추가대상 : 4개부서(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등)

□ 추진현황

- '20.12.10. : '20년 서소문1동 사무환경개선공사(11개부서) 완료
- '21.01.21. : '21년 환경개선공사 발주 및 공사 계약체결
- '21.02.01. : 공사착공
- '21.06.현재 : 18개부서 환경개선 완료

○ 서소문1동 사무환경개선공사

- '20년 추진실적 : 11개부서 완료
- '21년 추진실적 : 18개부서 완료('21년 5월 현재)
- '21년 추가대상 : 4개부서(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등)
- 서소문1동 환경개선 증별 현황(※추가4개부서 완료후 서소문1동 전체부서 완료예정)

총 수	부 서 명	
	개선 전	개선 후(는 완료 부서)
14	별과운영팀(총무과)	별과운영팀(총무과), 교통정보과, 체육진흥과
12	문화시설추진단장,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자원순환과, 생활안전과, 환경시민협력과	자원순환과, 생활안전과, 환경시민협력과(환경교육팀), 차량공여저장과
10	재무국장, 재무과, 자산관리과, 38세금징수과	재무국장, 재무과, 자산관리과, 38세금징수과
9	세제과, 세무과, 계약실사과	세제과, 세무과, 계약실사과
8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하천관리과, 물재생시설과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하천관리과, 물재생시설과
7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과,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자전거정책과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과,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자전거정책과
6	보행친화기획과, 주차계획과, 보행정책과, 교통운영과, 체육정책과	보행친화기획과, 주차계획과, 보행정책과, 교통운영과, 도시청도과
5	관광체육국장,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디자인정책과, 한양도성도감	관광체육국장,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디자인정책과, 체육정책과
4	문화본부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도시철도과	문화본부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3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2	교통지도과, 서울공여박물관	교통지도과, 문화시설추진단장,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상설감사장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1. 9월 : 각 부서별 재배치 협의 및 배치안 확정
- '21.10월 : 사무환경개선공사 발주 및 공사착공
- '21.11월 : 공사완료 후 부서입주

- 다만, 사무실 집기 구매는 포괄예산으로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내구연한·기능 이상 여부 등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자재창고 물품 등을 활용한 예산절감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③ 시정 행사용 카메라 구입

- 동 사업은 서울시정 행사용 카메라의 고장으로 인해 신규 카메라 및 렌즈를 구입하고자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984,564	971,564	13,000	
행 정 장 비 구 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4,564	971,564	13,000	-카메라 바디 : 9,000천원 * 1 = 9,000천원 -카메라 렌즈 : 4,000천원 * 1 = 4,000천원

- 행정국은 카메라와 렌즈의 접촉불량 현상이 심해져 촬영 중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으로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현재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활동 사진 촬영을 위해 구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구입개요

○ 기존물품

- 디지털 카메라 바디(Nicon JP/D2H)
 - ▶ 취득연도 : 2005년(※ 16년 사용, 카메라 내용연수 : 8년)
- 디지털 카메라 렌즈(AFS70-200VR F2.8G)
 - ▶ 취득연도 : 2009년(※ 12년 사용, 렌즈 내용연수 : 8년)

○ 구매예정 물품

- 디지털 카메라 바디(Nicon D6)
- 디지털 카메라 렌즈(AF-S NIKKOR 70-200mm)

○ 구매방법 : 조달을 통한 구매

- 다만,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내용연수(8년)가 경과된 경우 신규 구매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고장의 수리한계 초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국은 관련규정에 따라 내구연한 확인 및 물품관리에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행정장비구매”예산(9억 8천 5백만원)에 대한 세부집행계획 및 잔여 예산에 대한 검토 없이 기정예산의 1.3%에 불과한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카메라의 경우 정수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바, 정수물품산정과 관리 등 행정국의 물품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정수물품 목록]

정수 연번	물품 분류번호	물품명	정수 연번	물품 분류번호	물품명
1	25101501	미니버스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2	25101502	버스	32	25101986	견인트럭
3	25101503	일반승용차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34	25101991	유개트럭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35	25101994	탱크트럭
6	25101509	승용전기자동차	36	25101998	발전차
7	25101601	덤프트럭	37	25131899	무인비행기
8	25101611	화물트럭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39	40101701	냉방기
10	25101703	구급차	40	40101715	향온항습기
11	25101789	소방펌프차	41	40101787	냉난방기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13	25101791	소방화학차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44	41104510	건조캐비닛또는오븐
15	25101793	구조공작차	45	41111703	실체현미경
16	25101794	배연차	46	41111711	전자현미경
17	25101795	조연차	47	41115320	신호발생기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48	41115406	분광광도계
19	25101797	화재조사차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20	25101798	지휘차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21	25101799	제독차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22	25101910	살수차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25	25101926	제설차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26	25101927	칼슘살포차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27	25101930	조명차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28	25101959	도로보수차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29	25101963	노면청소차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30	25101969	고소작업차			

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2억 3천 4백만원), ‘코로나19 청사 소독방역’에 공공운영비(1억 1천 3백만원)등 총 5건에 대해 14억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추경 사유	21년 제1회 추경		증감액
			기정	추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계			1,400,114
	사무 관리비	○ 청사 임차료, 관리비 등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14,870,048	15,103,594	233,546
	공공 운영비	○ 코로나19 청사 소독방역비 - 하반기 소요액(7~12월)	257,083	369,730	112,647
	시설비	○ 업무공간 확충 및 사무환경 개선	1,767,063	2,820,984	1,053,921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리모델링	-	364,792	364,792
		- 서소문청사1동 사무환경개선 공사	1,767,063	2,275,760	508,697
- 부속의원 물리치료실 증설공사		-	180,432	180,432	

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사무관리비(청사임차료, 관리비 등)

- 동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2021.7.1)에 따라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 무교별관을 임차(2억 3천 3백만원)하고, 사무공간을 조성(시설비 3억 6천 5백만원)하고자 5억 9천 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사무관리비)	15,312,914	15,079,368	233,546	-6개월 임차비 합계('21년 7월~12월): 월임차비44,258천원×6개월+입주개시전 관리비-임대료 Rent Free =233,546천원 ※공사에 따른 입주개시전 관리비('21년5·6월): 16,000천 원*2개월= 32,000천원 ※임대료 Rent Free('21년11·12월): 32,000천원*2개월 = 64,000천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시설비)	5,317,493	4,952,701	364,792	-입주부서 사무공간면적: 723㎡ ×건축공사비(304천원/ ㎡)=219백만원 -리모델링 전기공사비: 30백만원, -리모델링 통신공사비: 95백만원 -리모델링 냉·난방공사비: 20백만원

- 행정국은 청사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추가 임차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추가 임차 및 리모델링공사

- 위 치 : 무교청사 3·4층(더익스체인지빌딩)
- 임차기간 : '21. 7. 1. ~ '24. 6. 30.(36개월)
- 임차면적 : 1,071㎡(전용면적 722㎡+공용면적 348㎡)
- 임차비용 : 233백만원('21년)
- 입주인원 : 1국 3과, 정원 56명(위원장 외 2명, 市 직원 38명, 경찰관 16명)
- 입주예정 : '21.6.10.입주
- 입주공간 : 위원장·상임위원실 각 1개, 위원회 회의실 2개, 사무실 3개

- 다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 비용은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로 사무국 임차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¹⁾).

- 둘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경찰사무국 청사 임대계약을 완료(2021.4.30.)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는 바,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서 행정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추진현황

- '21.04.30. : 자치경찰사무국 청사 임대계약 추진 및 계약 완료
- '21.05.31. : 입주를 위한 임대청사 리모델링공사 중(※현 공정률 83%)
- '21.06.10. : 입주부서 책상 등 집기류 배치 및 입주 예정

- 또한, 자치경찰제 사무국 출범에 따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기획경제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관련경비(운영경비 4천 8백만원, 기본경비 8천 7백만원)를 금번 추경에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편성하였는 바, 예산편성 및 관리부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 자치경찰제 관련 추경편성 세부내역)(조직담당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추경예산
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용 등 (48백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사무관리비)	26백만원
	자치경찰위원회 5급이하 36명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	11백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초단시간근로자 임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백만원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①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 기본경비 (87백만원)	행정장비 및 기타소모품 구입,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48백만원
	국내 출장여비 (국내여비)	39백만원

- 한편, 자치경찰의 독립적 조직 신설을 요구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기존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사무(경찰청장), 수사사무(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사무(자치경찰위원회)로 나눠 지휘·감독권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됨에 따라 자치경찰 추진 조직과 인력 구성 및 재정소요액과 분담방안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민 친화적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차질 없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코로나 19 청사 소독방역비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 중 청사 ‘소독방역비’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청사내 다중이용시설 및 사무실을 살균·소독하기 위해 1억 2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911,333	8,798,686	112,647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8,911,333	8,798,686	112,647	추경요구액(a-b) : 112,647 ◦ 하반기 소요액 : 174,950(a) - 본관 95,900천원 = (평일 300천원 × 129회) + (토요일 2,200천원 × 26회)

				- 별관 79,050천원 = (평일 250천원 × 129회) + (토요일 1,800천원 × 26회) ◦ 상반기 집행잔액 : 62,303(b)
--	--	--	--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대 상 : 시청사 159,748㎡(본관 90,742㎡, 별관 53,473㎡)
- 사업기간 : 2021. 7. ~ 12.
- 실시횟수 : 총 155회(평일 129회, 토요일 26회)
- 실시방법 : 전문 방역소독 업체 선정·실시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살균소독으로써 행정국이 청사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해충 방역과는 구별되는 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은 소독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바, 해당업체가 방역장소 및 방역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방역 소독 업체 선정 현황

- 선정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소독업체: 본관 - (주)더구름, 별관 - (주)프리엠환경
- 예산과목: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작업내용: 청사 내 사무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표면·분무 살균소독
- 소독장비: 초미립자분사기(무선 ULV, 유선 ULV), 압축식 분무기, N95마스크, 일회용장갑, 전신보호복, 고글, 덧신 등

③ 서소문청사1동 사무환경개선 공사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 중 서소문청사(1동) 사무환경개선 공사는 2021년 사무환경개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4개부서(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에 대한 사무공간을 개선하고자 5억 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통 계 목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세 부 내 역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시설비)	서소문1동 사무환경개선 추가 공사비	508	- 4개부서 사무공간면적: $1,443m^2 \times$ 건축공사비(304천원/m) =438백만원 ※단기산정: 마감재교체 등비교적 단순 공사임을 고려, “통합민원실 설치 및 청사 정비(2,028천원/m)”의 15%로 산정 = 304천원/m ² (참고: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20년) -사무환경개선 잔가공사비: 45백만원 -사무환경개선 통신공사비: 25백만원

- 동 사업은 본관과 서소문2청사를 비교하여 열악한 서소문1청사의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 근무만족도 향상 및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02.01. ~ '21.07.30.
- 사업예산 : 1,367,063천원

- 추진실적 : 18개부서 환경개선 완료('21년 6월 현재)
- 추가대상 : 4개부서(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등)

□ **추진현황**

- '20.12.10. : '20년 서소문1동 사무환경개선공사(11개부서) 완료
- '21.01.21. : '21년 환경개선공사 발주 및 공사 계약체결
- '21.02.01. : 공사착공
- '21.06.현재 : 18개부서 환경개선 완료

○ 서소문1동 사무환경개선공사

- '20년 추진실적 : 11개부서 완료
- '21년 추진실적 : 18개부서 완료('21년 5월 현재)
- '21년 추가대상 : 4개부서(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등)
- 서소문1동 환경개선 증별 현황(※추가4개부서 완료후 서소문1동 전체부서 완료예정)

층수	부 서 명	
	개선 전	개선 후(는 완료 부서)
14	별관운영팀(총무과)	별관운영팀(총무과), 교통정보과, 체육진흥과
12	문화시설추진단장,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자원순환과, 생활안전과, 환경시민협력과	자원순환과, 생활안전과, 환경시민협력과(환경교육팀), 치량공해저감과
10	재무국장, 재무과, 자산관리과, 38세금징수과	재무국장, 재무과, 자산관리과, 38세금징수과
9	선정과, 서무과, 계약심사과	제재과, 서무과, 계약심사과
8	문순환안전국장, 문순환정책과, 문화생태학과, 하천관리과, 문화생시실과	문순환안전국장, 문순환정책과, 문화생태학과, 하천관리과, 문화생시실과
7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자전거정책과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자전거정책과
6	보행친화기획관, 주차계획과, 보행정책과, 교통운영과, 체육정책과	보행친화기획관, 주차계획과 , 보행정책과, 교통운영과, 도시절도과
5	관광체육국장,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디자인정책과, 한양도성도감	관광체육국장,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디자인정책과, 체육정책과
4	문화본부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도시철도과	문화본부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3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2	교통지도과, 서울공예박물관	교통지도과, 문화시설추진단장,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상설감시장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1. 9월 : 각 부서별 재배치 협의 및 배치안 확정
- '21.10월 : 사무환경개선공사 발주 및 공사착공
- '21.11월 : 공사완료 후 부서입주

- 다만, 행정국은 땀질식 사무환경개선 사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인 사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특히, 현행 사무공간 개선과 임차 사무 공간 및 신청사 마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④ 부속의원 물리치료실 증설공사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 중 서소문 2동 부속의원 증설은 코로나 19와 현안업무 가중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 누적을 완화하고자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해 1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133,133	4,952,701	180,432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 리 (시 설 비)	5,133,133	4,952,701	180,432	-물리치료실 증설 면적: 63㎡ ×공사비(2,864천원/㎡) =180,432천원 (전기,기계,통신공사비 포함)

- 물리치료실은 건강과 관련한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운영되는 부속 의원에 설치하여 직원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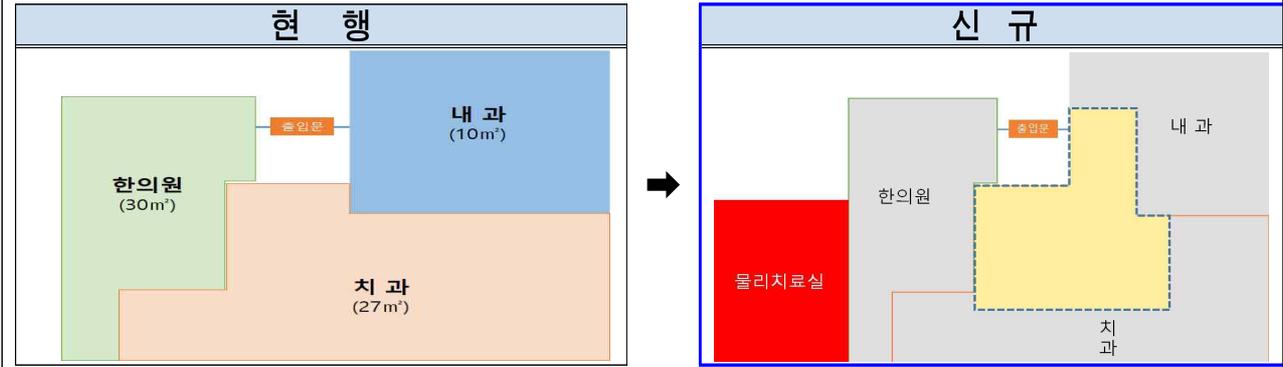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소문청사 2동 1층 부속의원
- 사업예산 : 180,432천원
- 설치장소 : 기존 시상조희 사무실(63㎡)
- 부속의원 현황 : 281㎡(가정의학과:76㎡, 치과:124㎡, 한의원:71㎡, 공동입구:10㎡)

가정의학과 채혈, 혈압, 인바디	+	한 의 원 뜸, 침, 부항, 물리치료	+	치 과 구강검사 및 치료일정 상담	+	물리치료실 온열, 전기, 운동 치료
----------------------	---	-------------------------	---	-----------------------	---	------------------------

□ 추진계획

- 시 상조회 사무실 → 서소문별관 1동 13층 이동(예정)
- 기존 상조회 공간(63㎡) → 물리치료실 공간으로 신규 구축



- 행정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현안업무 가중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직원이 증가하고 있고, 협소한 별도 대기공간 부족으로 부속의원 이용시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보여짐.

※ 2020년 한의원 내원 환자 89.0%가 근골격계 질환사유로 방문

※ 질환별 현황(총4,193명) : 근·골격계 3,723명, 소화기 174명, 호흡기 156명, 기타 140명

[최근 3년 부속의원 이용실적]

(단위 : 건)

연 도	구 분	계	진료/검진			예방접종
			응급처치	처방·처치	건강상담	
2021.5월	계	10,855	489	7,362	2,718	286
	의무실	5,816	420	2,905	2,205	286
	치과	1,241	18	754	469	-
	한의원	3,798	51	3,703	44	-
2020	계	31,410	1,147	17,512	5,995	6,756
	의무실	19,984	1,024	7,282	4,922	6,756
	치과	2,720	37	1,710	973	-
	한의원	8,706	86	8,520	100	-

2019	계	36,993	1,370	23,082	6,521	6,020
	의무실	21,019	1,190	8,978	4,831	6,020
	치 과	4,608	72	3,000	1,536	-
	한의원	11,366	108	11,104	154	-
2018	계	36,001	1,436	22,742	5,957	5,866
	의무실	20,789	1,220	9,412	4,291	5,866
	치 과	4,824	108	3,127	1,589	-
	한의원	10,388	108	10,203	77	-

- 다만, 물리치료실 등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의료법」)에 따라 개설신고가 필요하고,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는 물리치료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바, 인력충원의 선행이 필수조건이라고 하겠음.

<p>「의료법」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 행정국은 우선, 기존 부속의원 내과의사 처방 및 기기를 활용한 치료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1명) 및 물리치료사를 채용(2명)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 관련 기기를 사용할 의료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치료 운영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행정형태임은 물론 추후 관련 전문의료인력 채용 후 필요한 기기와 내용이 변경될수 있어 예산낭비 요소가 크다고 할 것인 바, 금번 물리치료실 설치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시청 부속의원 시설 및 인력 현황](의료인력 : 총9명)

구 분	의 무 실	치 과	한 의 원
인 력	2명 임기제 가급, 의사 1명 일반직, 간호 1명	4명 임기제 나급, 치과 의사 1명 일반직, 의료기술 3명	3명 임기제 나급, 한의사 1명 일반직, 간호 1명 시간선택임기제, 간호1명
의원 별 이용인원	일평균 42명	일평균 11명 (일반진료 4명, 스케일링 7명)	일평균 22명

※ 의료기술 : 치과위생사

다. 노후시설물 개선

-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은 ‘서소문청사(5동) 노후냉난방기 교체 비용(4억원), ‘본관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기 교체 시설비(1억 3천 5백만원) 등 총 3건에 대해 6억 9천 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사업명	통계목	추정 사유	21년 제1회 추정		증감액
			기정	추정	
노후시설 물 개선	시설비	계			690,755
		○ 서소문청사 5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	-	400,000	400,000
		○ 본관 무정전전원장치 축전기 교체	-	135,000	135,000
		○ 본관 중앙통제실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	155,755	155,755

- 이번 추정 예산은 청사 노후시설물(모니터링 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냉난방기)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것임.
- ‘중앙통제실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는 기계, 전기, 소방, 승강기 설비 등의 24시간 감시와 제어를 위한 중요설비로서 노후화로 인한 화질불량 및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최신시스템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며,

시설물 개요

○ 시설현황

위 치	설비현황	설치년도	비고
본관(지하3층)	모니터링시스템(LCD 46"×14대)	2012년	사용연수 : 9년 경과 (내용연수 : 5년)
본관(지하4층)	UPS : 100KVA×3대 축전지 : 2V(300AH)×192개×3조	2012년	사용연수 : 9년 경과
서소문청사5동	팬코일 유닛 81대 (상방 : 4,730Kcal/h, 난방 9,250Kcal/h)	2009년	사용연수 : 12년 경과 (내용연수 : 10년)

※ 내용연수 : 조달청고시 제2018-18호

○ 현황사진



<중앙통제실 모니터링>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냉난방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 계획
- 사업규모 : 중앙통제실 모니터 교체(7대), 영상시스템 및 부대공사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7. ~ 12.
- 추진방법
 - LED패널 및 영상시스템 : 조달청 계약의뢰
 - 인테리어 및 부대공사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추진내용 : 노후 LCD패널 시스템 교체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65,380	409,625	155,755	
노 후 시 설 물 개 선 (시 설 설 비)	565,380	409,625	155,755	○ 중앙통제실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155,75 - 모니터링시스템 교체 108,95 - 영상시스템 교체 36,40 - 인테리어 및 부대공사 10,40

-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UPS)' 교체는 정전시 정원을 공급하기 위한 주요설비이고, 노후화로 인한 축전지 기능 저하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본관 지하4층 통신용 UPS실
- 사업규모 : 축전지 80개×3개조(12V, 200AH)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7. ~ 12.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
- 추진내용 : 노후화된 축전지 교체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44,625	409,625	135,000	
노 후 시 설 물 개 선 (시 설 비)	544,625	409,625	13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관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135,000 - 축전지 구매 설치 135,000

- 또한, '서소문청사(5동) 냉난방기' 교체는 팬코일 유닛형으로 사용연수(12년)가 경과되어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교체하려는 것임.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소문청사 5동
- 사업규모
 - 전기히트펌프 등 관급자재 구매설치 : 실내기 50대, 실외기 7대, 전열교환기 등
 - 노후 팬코일 유닛 철거 및 전기공사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9. ~ 12.
- 추진방법
 - 전기히트펌프 등 관급자재 구매설치 : 조달청 계약의뢰
 - 철거 및 전기공사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추진내용 : 노후 팬코일유닛을 전기히트펌프로 교체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09,625	409,625	400,000	
노 후 시 설 물 개 선 (시 설 비)	809,625	409,625	4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소문청사 5동 냉난방기 교체공사 400,000 - 전기히트펌프 등 관급자재 구매 250,000 - 기계공사(전열교환기 설치 등) 75,000 - 전기공사 75,000

- ‘중앙통제실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사업은 최신의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화질을 개선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UPS)’ 교체사업은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통하여 최적의 설비 상태를 확보하며, ‘서소문청사(5동)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직원들의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신규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바, 고장의 수리한계 초과여부, 기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공무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 “공무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은 공무원 출산휴가 등 휴직자 발생 부서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정 예산(4억 3천 3백만원) 대비 2억 3백만원(32.0%)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637,038	433,309	203,729	
공무원 출산휴가 등 대 체 인 력 지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7,038	433,309	203,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임금 : 156,796천원 (추가 운영인력 : 80,656원 * 27일 * 12명 * 6월) ○ 수당 : 25,920천원 (추가 운영인력 : 360천원 * 12명 * 6월) ○ 4대보험료 : 18,455천원 ○ 기편성자(13명) 시중노임단가 증가분 : 2,558천원

○ 행정국은 2021년 예산 편성시 2020년 평균지원인력(13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이후 시행된 대체인력 수요조사(「2021년 공무원 대체인력 지원 파악을 위한 협조요청(2021.2.18.), 인사과-5951호」)에서 12명(추가인력(9명)+ 예비인력(3명))의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추경 증액 사유로 밝히고 있음.

※ '21년 대체인력 수요조사에 따라 7월 이후 12명 추가 채용 필요

- 추가인력 예정(9) : 시립대(1), 역사박물관(5), 시립미술관(1), 소방서(1), 동부녹사(1)
- 예비인력 확보(3) : 3명(기존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장 시 연장계약 필요)

[공무원 대체인력 추가 수요조사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 현황('21.5. 기준)]

소속	휴직(예상)인원	대체인력운영	추가운영예상인원 ('21.7. 이후)
소방서	4명	3명	1명
한성백제박물관	3명	3명	0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명	0명	0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명	0명	1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명	1명	0명
서울식물원	2명	2명	0명
한강사업본부	3명	1명	0명
서북병원	2명	1명	0명
은평병원	1명	1명	0명
서울역사박물관	9명	4명	5명
서울대공원	2명	0명	0명
서울시립미술관	1명	0명	1명
의회사무처	1명	1명	0명
서울시립대	1명	0명	1명
합계	33명	17명	9명

- “공무직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의무 사항인 바, 대체인력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휴직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4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

- 대체인력제도는 육아휴직 발생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성과 저하를 보완하고, 휴직자들이 마음 편히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임.
- 다만,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시 업무와 연관된 별도의 실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자간의 사전 업무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연계 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대체인력 뱅크를 통한 인력정보 공유와 효율성 제고 확립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직원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시 부속의원(서소문별관 2동 1층)을 개선하여 기존 진료과목 외 물리치료 과목 개설의 추진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 바, 기정 예산(12억 9천 4백만원) 대비 1억원(7.2%)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93,707	100,000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93,707	1,293,707	100,000	◦ 부속의원 물리치료실 설치비 : 100,000천원

- 금번 추경 증액편성 사업은 현안 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 바, 서울시 직원들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물리치료실 자산취득비 세부내역

○ 구매 예정 기기(안)

저주파 자극기 (STT-570)	극초단파 자극기 (ME-9150)	적외선 치료기 (IL-300)	간섭파 자극기 (EF-160)
			
경미한 통증 완화	근육통 완화, 재활치료	적외선 통증 완화	근육통 완화

초욕치료기 (NP-1000)	종합운동기 (6MODE)	치료용 침대 (1800×700×600, mm)
		
통증 완화, 재활	근육 재활 운동	치료용 침대

○ 소요 예산(안)

- 저주파 자극기(1,980천원)x 2대 : 3,960천원
- 극초단파 자극기(13,200천원)x 1대 : 13,200천원
- 적외선 치료기(132천원)x 8대 : 1,056천원
- 간섭파 자극기(14,300천원)x 4대 : 57,200천원
- 초욕치료기(11,000천원)x 2대 : 22,000천원
- 종합운동기(1,320천원)x 1대 : 1,320천원
- 치료용 침대(132천원)x 8대 : 1,056천원
- 기타 기기 보조(208천원) : 208천원

합 계 : 100,000천원

- 다만, 물리치료실 인력이 채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기기와 장비를 먼저 구매하는 것은 이를 실제 사용하는 의료인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바, 정상적인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신중한 판단과 재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부속의원 기기 및 장비 구입 예산은 물리치료실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제로 한 것인 바, 물리치료실 설치와 연계한 판단 및 예산 심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바. 조정교부금

-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 (3조 2,784억 9백만원) 대비 7,684억 5천 8백만(19.0%)을 증액 조정 하려는 것임.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계	4,046,954,495	3,278,495,915	768,458,580
자 치 구 조 정 교 부 금	4,046,954,495	3,278,495,915	768,458,580

※ 자치구 자원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를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합리적 자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의 여러 여건에 맞춘 기본적인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임.

- 금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20년도 조정교부금 예·결산차액분 (7,685억원)을 금번에 증액 조정하려는 것이나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교 부율 개선 등 다음과 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년도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C×22.6%)	32,869	40,553	7,685
계(C=A+B)	145,436	179,439	34,003
보통세(A)	143,914	178,136	34,222
취 득 세	46,330	74,707	28,378
주 민 세	5,945	5,946	1
자 동 차 세	11,050	11,686	636
레 저 세	1,249	229	△1,019
담 배 소 비 세	5,643	6,052	409

지방소비세	19,367	18,439	△928
지방소득세	54,331	61,076	6,746
지난연도 보통세(B)	1,522	1,303	△219
취 득 세	93	73	△19
주 민 세	60	57	△3
자동차세	985	624	△361
지방소득세	384	548	164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근거 재산세 제외
- 2)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2호 근거 지방소비세 6% 부분 중 지방교육세분 제외

〈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

구 분	'21년 당초예산	'21년 추경예산	증가액
합 계	32,785	40,470	7,685
일반조정교부금	29,506	36,423	6,916
중 로 구	483	597	114
중 구	101	130	29
중 용 산 구	604	744	140
성 동 구	976	1,208	231
광 진 구	1,198	1,478	280
동 대 문 구	1,530	1,885	356
중 량 구	1,663	2,052	388
성 북 구	1,906	2,352	446
강 북 구	1,689	2,081	392
도 봉 구	1,657	2,043	386
노 원 구	2,245	2,772	528
은 평 구	1,839	2,266	427
서 대 문 구	1,287	1,588	301
마 포 구	900	1,113	213
양 천 구	1,342	1,658	316
강 서 구	1,650	2,038	387
구 로 구	1,576	1,943	367
금 천 구	1,157	1,427	270
영 등 포 구	777	961	183
동 작 구	1,272	1,569	297
관 악 구	1,810	2,232	422
서 초 구	37	53	16
강 남 구	-	-	-
송 파 구	433	539	106
강 동 구	1,373	1,693	320
특별조정교부금	3,278	4,047	768

- 첫째, 2020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106.6%)가 이미 6.6%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110.4%)시 11.4%를 초과하는 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 21%→22.6%)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교부금 추경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변화〉

구 분	'21년도 배분 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1년도 배분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A)	'21년도 추경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B)	증감 (B-A)
강남구 포함	73.4%	105.2%	112.7%	7.5%p
강남구 제외	66.6%	100.1%	108.0%	7.9%p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보통세의 21%→22.6%) 관련 조례 개정 경위〉

※ 2015년 조례 개정시 시장 지시에 의해 조례 개정을 위한 소관 상임위나 의장단에 업무보고나 사전협의 한 번 없이 교부율을 명시(22.78%)하여 인상을 기정사실화 발표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시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심각히 저해한 사안임.

○ 추진경위

- 2015. 7. 21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정교부율 인상 합의문(「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일방 발표

※ 조정교부율 인상(현행 21% → 조정 22.78%)

※ 2016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목표로 인상안 도출(2015년 97.1%)

※ 2016년도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 2,862억원

- 2015. 10. 30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 (현행 21% → 조정 22.76%)

- 2015. 11. 9 관련 조례 및 예산 의회 의결 전 각 자치구로 조정교부금액 가내시

- 2015. 12. 21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진통 끝에 관련 예산안과 함께 조례안 의회 의결(현행 21% → 조정 22.6%(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기준)로 수정 가결)

※ 재원조정교부금 인상 관련 주요 쟁점

- ①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한번 인상한 교부율 인하 어려움
- ② 복지 수요 및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교부율 상향 조정과 같은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개정 변경보다는 재정보전 등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조정교부금 목적(자치구간 균형발전) 훼손)
- ③ 자치구간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구는 혜택 미비)
- ④ 추가적인 재원확보 노력 없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은 시 재정여건(경상적 지출 과다) 만들 어렵게 하여 광역사업 추진에 차질 발생

-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7,685억원)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경우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들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당초 보통세의 세입추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서 보통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결산 차액('16년 4,651억원→'17년 4,453억원→ '18년 4,027억원→ '19년 4,194억원→ '20년 7,685억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보통세의 세입추계를 보다 현실화하여 과도한 결산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정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16년도	23,915	28,566	4,651	◦ '17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 잔액 416억원 상계)
'17년도	26,444	30,897	4,453	◦ '18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18년도	29,214	33,241	4,027	◦ '19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19년도	31,099	35,293	4,194	◦ '20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20년도	32,869	40,553	7,685	◦ '21년 추경 계상하여 정산 예정

※ 행정국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3년마다 재산출하여 자치구 재정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가산교부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학술용역(7천5백만원)을 실시중에 있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측정단위는 별표 1에,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은 별표 2에 각각 따르고,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은 3년마다 측정항목별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측정단위별로 산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사.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은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0.12.31.)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에 의한 것으로 기정 예산(1억 1천 5백만원) 대비 4억 1천 1백만원(457.7%)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26,400	115,000	411,400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 우 및 지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26,400	115,000	41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 393,000천원 ◦ 장제비 : 7,000천원 ◦ 생활지원금 : 11,400천원

○ 금번 추경 증액편성 사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당초 조례 개정에 따라 명예수당(393,000천원)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장제비 예상 소요액(7,000천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편성하였으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 증가(편성시 95명 → 현재 100명)하고, 다른 시도 생활지원금 지급률 추이(편성시 4.46% → 현재 5.37%) 등을 감안하여 예산 부족분(11,400천원)이 예상됨에 따라 금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 타 시·도 생활지원금 평균 지급률 : $(4.25\% + 6.48\%) / 2 = 5.37\%$
 · 광주광역시 지급률 : 4.25%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추정인원 777명 중 33명)
 · 전라남도 지급률 : 6.48%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 추정인원 432명 중 28명)

- 다만, 동 사업의 예산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예산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관련 예산 편성시 실제 수요자 조사 등이 없는 상태에서 추정인원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추계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예산이 보수적으로 편성되어 부족분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분석과 홍보 등을 통한 실제 수혜자 파악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세부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비고
명예수당	393,000천원 = 655명(명예수당 추정인원) × 100천원 × 6개월	655명(명예수당 추정인원) = 2,120명(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추정 인원) × 32.5%(심의 신청인원 중 65세 이상 비율) - 34명(생활지원금 기지급자 중 65세 이상 인원)
장제비	7,000천원 = 655명(명예수당 추정인원) × 1%(장제비 예상 지급률) × 1,000천원	현재까지 서울시 및 타 시·도 장제비 지급내역 없음
생활지원금	11,400천원 = 19명(생활지원금 추가 추정인원) × 100천원 × 6개월	19명(생활지원금 추가 추정인원) = 2,120명(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추정 인원) × 5.37%(타 시·도 생활지원금 평균지급률) - 95명(현재 예산편성인원)

* 2,120명(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추정 인원)
 = 2,880명(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 인원) × 73.6%(전체 신청 대비 인용률)

아.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반환”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2천 6백만원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5,606	0	25,606	
국 고 보 조 금 반 환 금	25,606	0	25,6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18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7,196 - '20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7,869 -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지원 10,541

- 행정국은 국고보조금 결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대한 반납처리를 위한 것으로 추경 사유를 밝히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은 자치구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고, ‘세출예산(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2018년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2020년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유해 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지원 집행에 따른 잔액으로 코로나 19 상황 지속에 따른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 행정국은 국조보조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의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